

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3. 2. 16 선고 2020가합514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1. 주식회사 A

2. B

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이희정

피 고 1. C

2. D

3. E

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승 담당변호사 이승호, 이재광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대현

변 론 종 결 2023. 2. 2.

판 결 선 고 2023. 2. 16.

주 문

1. 이 사건 소 중 주식회사 F와 피고 C 사이에 [별지4] 기재 소매점 영업에 관하여 체결한 증여계약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.
2.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1. 주식회사 F(이하 'F'라 한다)와 피고 C 사이에 [별지4] 기재 소매점 영업에 관하여 체결한 증여계약은 10,000,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. 피고 C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5,000,000원, 원고 B에게 5,000,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피고 C과 피고 D 사이에 [별지1]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. 12. 24.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. 피고 D은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. 12. 24. 접수 제3011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피고 C과 피고 E 사이에 [별지2]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. 12. 17. 체결한 매매계약 및 [별지3]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. 5. 15. 체결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. 피고 E은 [별지2]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. 12. 8. 접수 제2953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[별지3]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2019. 5. 16. 접수 제500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F와 피고 C 사이의 증여계약 취소 청구 부분 소의 적법 여부

원고들은 이 부분 사해행위취소 대상인 증여계약의 체결일자,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으므로, 이 부분 소는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.

2. 피고 C에 대한 금전청구

이 부분 청구는 F와 피고 C 사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 가액배상청구인데,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취소청구 부분이 부적법한 이상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가액배상청구는 이유 없다.

3. 피고 C과 나머지 피고들 사이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

가. 기초사실

- 1) 원고 주식회사 A(이하 '원고 A'라 한다)는 경북 예천군 G 소재 건물(이하 '이 사건 건물'이라 한다)의 소유자이고, 원고 B은 원고 A로부터 이 사건 건물 2층 및 3층을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.
- 2) 피고 C이 대표이사로 있는 F는 원고 A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을 임차하여 식자재매장을 운영하는 회사이다.
- 3) 2018. 9. 30.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발화한 화재(이하 '이 사건 화재'라 한다)로 이 사건 건물이 전소되었다.
- 4) 원고들은 F와 피고 C 등을 상대로 이 법원 2019가합5235호로 이 사건 화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21. 7. 22. F에 대하여 일부 인용(원고 A 손해배상액: 1,166,148,460원 및 지연손해금, 원고 B 손해배상액: 390,298,682원 및 지연손해금), 피고 C에 대하여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. 이에 원고들은 항소하였으나 2022. 12. 8. 항소가 기각되었고(대구고등법원 2021나25145), 원고들이 상고하여 현재 위 사건은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(대법원 2020다307232).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4, 8호증, 을 제1, 10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나. 원고들의 주장

피고 C은 F의 대표이사로서, F가 임차한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그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점검하고 F 피용자의 사무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였다.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(민법 제750조), 대표이사의 업무집행 손해배상책임(상법 제389조 제2항, 제210조), 또는 사용자책임(민법 제756조)을 진다.

그런데 피고 C은 원고들에게 위 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이후, 피고 D과 [별지1]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, 피고 E과 [별지2], [별지3]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사해행위를 하였으므로, 위 각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D, E에게 각 원상회복을

구한다.

다. 판단

이 부분 청구는 피고 C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을 전제로 한 것이다.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, 피고 C의 업무집행상 주의의무 위반 또는 그 피용자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,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4. 결론

이 사건 소 중 F와 피고 C 사이에 [별지4] 기재 소매점 영업에 관하여 체결한 증여계약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,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이규철, 판사 김 송, 판사 신철순

별지